자료집

『정책토론회』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일　　시 : 2016년 7월 1일(금)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대한민국국회 NATIONAL ASSEMBLY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

프로그램

○ 주　　제 :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일　　시 : 2016년 7월 1일(금) 10:0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변재일·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 ~ 10:10	인사말씀
10:10 ~ 10:20	축사 및 내빈소개
10:20 ~ 11:00	발제1 :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소비자 후생 중대 방안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제2 : 단말기 유통법과 통신이슈 및 개선과제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중심으로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11:00 ~ 11:50	종합토론 좌 장 : 곽정호(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 토론자: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11:50 ~ 12:00	마무리 발언 및 정리

* 세부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 사 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의원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온가족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린다'고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는 통신요금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요금을 빼놓고는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단말기 유통은 판매점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및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판매된 삼성이나 애플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외국보다 비싼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해묵은 담합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2014년 10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제도시행 이후 소비자의 통신비용 감소체감효과는 낮은 반면에, 이동통신회사의 수익증대 효과만 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이 하향평준화 되면서 통신사들이 그만큼을 절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제도의 실효성 문제로 단말기 유통법의 존폐 여부와 개정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시행 이후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 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착오를 명확히 진단하여 통신 소비자 편익과 통신시장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단말기 유통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다시 고민하고,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소 긴급히 열렸음에도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를 비롯해 발제를 맡으신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07.0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인 사 말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이덕승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5,40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단말기 유통구조 전반을 규율하는 단통법의 등장은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부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이 흘러나온 이래, 정부와 국회는 물론 민간에서도 저마다의 개선안을 내놓으며 그 어느 때보다 단통법 개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시점에 의미 있는 토론회를 열게 되어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변재일 의원님과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님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토론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단통법을 오직 국민을 위한, 오직 소비자를 위한 법률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학계, 정부, 시민사회, 유통업계까지 모든 주체들께서 토론자로 함께해주신 만큼, 각계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고루 수렴하고 이를 밑거름 삼아 단통법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위해 애쓰신 변재일 의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의 주 취지는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과거 시간과 장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불안정했던 단말기 시장은 안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요금제 출시, 분리요금제 시행 등 요금 측면에서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계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의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과다 판매 장려금 지급 행위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현재 단말기 유통법이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 대신에 국민을 위한 법률로 재탄생되는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가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정부, 국회,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모두가 논의 테이블에 앉은 만큼,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발제에 참여해주신 신민수 한양대 교수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 7. 1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축 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뜻 깊은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통신시장의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바로 잡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해 이전에 비하여 통신시장의 유통구조와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안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특히, 통신서비스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국민들이 느끼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와 함께 '3대 부담'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민생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자들의 단말기 불법 보조금 및 과다 판매 장려금 지급 행위 등도 여전합니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과 논란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변재일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

가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야당간사로서 기본요금 폐지법안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통신비 인하 관련 법안들은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와 함께 단말기 완전 지급제 도입,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가격에 대한 국제 비교 실시 등 단말기유통법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오직 민생'이라는 기치에도 맞는 민생법안인 단말기유통법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당의 정책으로서도 기대가 큽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단말기유통법이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되고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사회, 정부, 학계와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신 만큼 심도 있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통신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고 정확한 방향제시 부탁드립니다.

저도 원내대표로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발제 I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 방안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

2016. 7.

신 민 수

한양대학교
minsooshin@hanyang.ac.kr

목차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의견 차이

현안 이슈

경쟁활성화를 위한 대안

© 신민수

추진 배경 및 목적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단말기 유통법)’의 추진 배경
  -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 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을 왜곡
  -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함으로서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지고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 심화를 초래

- 단말기 유통법의 목적과 기대 효과
  - 목적: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기대효과: 소비자 후생 증가, 규제의 효율성 증가, 건전한 경쟁으로의 전환, 합리적 소비행위 정착 및 가계통신비 절감 등 다양함

© 신민수

주요 내용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민수

주요 내용

제4조 :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보조금 상한 및 공시제)

-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
-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대폰 출고가 요금제에 따른 공식 지원금 사전 공지
- 매장별 공식 보조금에서 15%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추가지급규모도 공개 명시)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12679호(2014.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제2항은 2017.9.30.까지 유효함]

제6조 :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비례원칙 준수)

- 통신서비스 단독 가입시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예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신민수

주요 내용

제7조 :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요금제 구분 및 강제 계약 금지)

-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할인액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 금지
- 보조금 지급 조건하에 요금제 강행 및 부가서비스 의무 계약 금지

□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판매점 사전승낙제)

- 대리점에 판매점 선임시 이동통신사업사의 사전승낙없이는 선임불가
-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

□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사실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민수

주요 내용

제9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유통망간 공정거래 확립)

- 제조사는 이통사와의 단말 유통에 관한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음
-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과 관련한 차별적 규정이나 조건 부과 금지

□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식별번호조회 시스템)

- 분실도난 단말장치 해외 수출금지
-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실도난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KAIT 주관)

□ 제10조(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신민수

주요 내용

제11조 : 긴급중지 명령(영업정지 조치·발동권)

-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수준, 번호이동상황, 이용자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통사업자, 대리점, 판매자에게 영업 일시중지명령 가능

□ 제11조(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5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95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14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14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이의 대한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 자료제출 및 보관(장려금 및 유통 관련 자료 작성 및 .

-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단말기기 관련 상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제공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뿐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2679호(2014.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7.9.30.까지 유효함]

© 신민수

주요 내용

© 신민수

효과에 대한 의견 차이

구 분	효과가 있음	부작용이 있음
목적	투명한 보조금 지급 체계	보조금 지급의 금지
논 거	• 차별 금지로 인한 고객 권리 보장 • 요금 할인과 단말기 할인 분리로 인한 요금 투명성 강화 • 정보 격차에 의한 이용자 차별 해소 • 마케팅비 감소를 통한 요금 및 서비스 경쟁 유도 • 저가 요금제 및 중고단말기 사용 빈도 증가로 인한 통신 과소비 해소	• 고정가격제 혹은 가격담합 가능으로 시장 기능 침해 • 보조금 감소로 인한 높은 비용 부담으로 체감 가계통신비 인상 • 단말기 거래 급감으로 유통 시장 위축
현상	• 신규 번호이동 감소 • 기기 변경 및 중고단말 가입자 증가 •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감소 • 요금 할인 경쟁 진행	• 고가단말기 보조금 감소 • 신규 가입율 감소 • 단말기 판매량 감소 • 판매점, 대리점 폐업 증가

© 신민수

효과에 대한 의견 차이

- **2014년 10월 단통법의 통과를 전후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2015년 1월 이후에는 긍정과 부정적 인식이 양립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 (곽정호, 2016)**

긍정과 부정적 표현의 형태소별 빈도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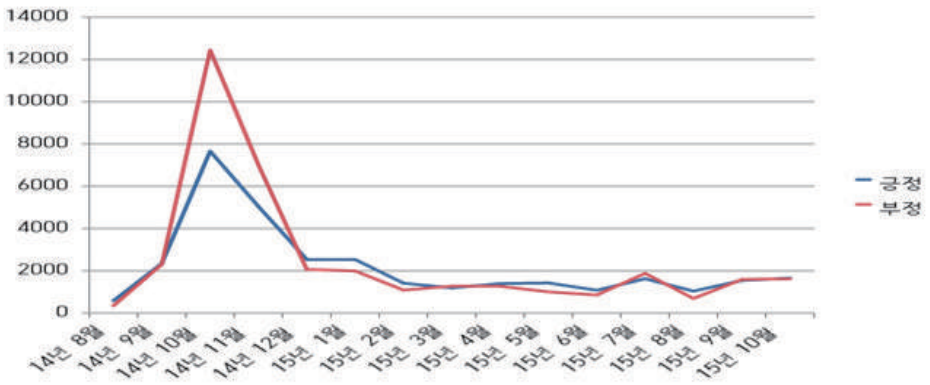

© 신민수

법 시행 효과

- 긍정적 효과
  - 중저가 단말기의 유통
  -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감소
  - 요금할인 다양화: 데이터요금제 등
  - 판매점 위축 완화
- 부정적 효과
  - 단말기 요금인하 효과 미흡
  - 이통사의 과도한 수익성
  - 중소기업 등 판매점 위축
  - 요금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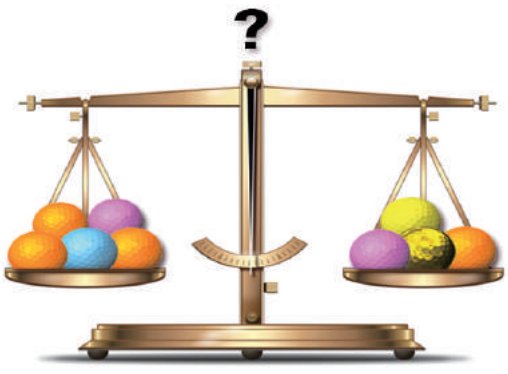

© 신민수

효과에 대한 의견 차이

- 이동통신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보완관계를 고려하면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두 재화를 결합시키는 가교 역할을 수행
  - 일반적으로 두 독립적인 독점기업이 보완재를 생산하는 경우에 비해 한 기업이 두 재화를 결합제품으로 판매할 때 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키고 또 소비자잉여도 함께 증가함
-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보완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전략적 가격 또는 요금 조정의 유인을 가지게 됨
  - 이는 가계통신비 경감, 요금 인하,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을 동시에 유도할 수 없음을 의미
-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입장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 단말기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단말기 제조업체 대 통신업체간 이윤배분구조에 따른 단통법에 대한 입장차이: 이해당사자 대립
  - 두 개의 시장(단말기 유통시장 대 통신서비스 시장)에 따른 입장차이(통신 서비스시장에서의 보조금 지급중지가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전문가들의 이론적 논의 대립
- 이러한 논의는 단통법의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신민수

현안 이슈

- 분리공시제도(단말기 완전지급제)
  -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에도 출고가 인하 및 요금인하 경쟁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이 분리되지 않고 총액으로만 표시되기 때문이라는 이슈

  ✓ 찬성: 출고가 인하 기반조성,소비자의 알 권리 및 혼란 방지
  ✓ 반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제조사와의 역차별
  ※ 분리공시 도입 논란은 장기적으로 단말기와 서비스를 별도로 구입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음

- 요금 인가제
  - 단말기유통법의 입법취지인 통신사 간의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인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슈

  ✓ 폐지: 요금경쟁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비대칭규제가 이동통신사의 담합 보장
  ✓ 유지: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규제(일반적 비대칭규제); 요금인하 효과 미비

© 신민수

현안 이슈

- 보조금 상한제 폐지
  - 과도한 보조금 경쟁의 폐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제도화하였으나, 시행결과 보조금 상한제로 인하여 오히려 출고가 및 요금인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슈

    ✓ 찬성: 상한제의 전제조건인 과도한 보조금 경쟁 없음, 기존 시장 점유율 고착효과

    ✓ 반대: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도한 보조금을 통해 고객의 해지비용 증대

- 신규/번호-기변 차등금지
  - 과도한 이용자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화하였으나, 시행결과 신규-기변 차등금지로 인해 번호이동이 크게 감소하고 요금 및 서비스경쟁이 크게 감소하여 시장지배력이 고착화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슈

- 그 외
  - 단통법 폐지 (과도한 시장개입 및 장기적 후생저하 등)

© 신민수

논의 방향

-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논의 방향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 가격차별화와 수직적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대개 생산증대(서비스 가입자의 확대)를 통해서 얻어짐으로, 보조금을 통한 가격차별화가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순증이 있어야 하며, 단말기와 서비스의 수직결합이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면 역시 결합된 가격의 하락이 전체 가입자의 증가로 이어져야 함
  - 이 경우에는 단말기 유통법의 개정이 논의됨
-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성장 단계를 고려할 때 단말기 유통법에 의한 생산 감소와 그로 인한 효율성 감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단말기 유통법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됨
- 실증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향후에도 '포화'라고 불릴 수 있는 시장이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신규서비스로의 전환속도가 낮아지는 형태로 거래 감소가 발생할 수 도 있음
- 현 상황에서의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면 요금 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유인하는 경쟁 활성화 대안이 요구되고 있음

© 신민수

경쟁활성화를 위한 대안

- 분리공시제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 분리공시제 (더 나아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 서비스와 단말기간 수직적 분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수직적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이중마진화(double marginalization)가 발생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도출이 필요
  - 수직적으로 보완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분리되면, 각각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미치는 외부성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가격은 높아지고, 생산량은 줄어들며, 총이윤도 감소할 수 있음
  -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이 아예 휴대폰을 팔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유통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요금 인가제
  - 사업자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슈로서 경쟁의 보호가 중요한지 아니면 능력있는 경쟁자의 보호가 중요한지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 신민수

경쟁활성화를 위한 대안

- 지원금 상한 폐지 경과
  - 지원금 상한을 기존 **25~35**만원(現 **33**만원)사이에서 출고가 이하로 고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폐지와 같은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언론 보도(`**16. 6. 9**)
- 지원금 상한 폐지의 목적
  - 이통사 및 제조사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단말기 초기 구매비 부담을 경감시켜 혜택을 증대시키고, 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 유통망 상생을 도모하여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함으로 판단됨
- 지원금 상한 폐지와 관련 업계내 이해관계자 입장
  - ✓ 제조사
  - ✓ 유통점
  - ✓ 이동통신 사업자
  - ✓ 알뜰폰 사업자

© 신민수

경쟁 활성화를 위한 대안

- 단말기 유통법의 주요 항목은 보조금에 대한 '차별 금지'와 '공시'임
- 지원금 상한 폐지 항목 만으로 시장 내 경쟁을 유인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요 **Flagship** 단말 기준 지원금 경쟁 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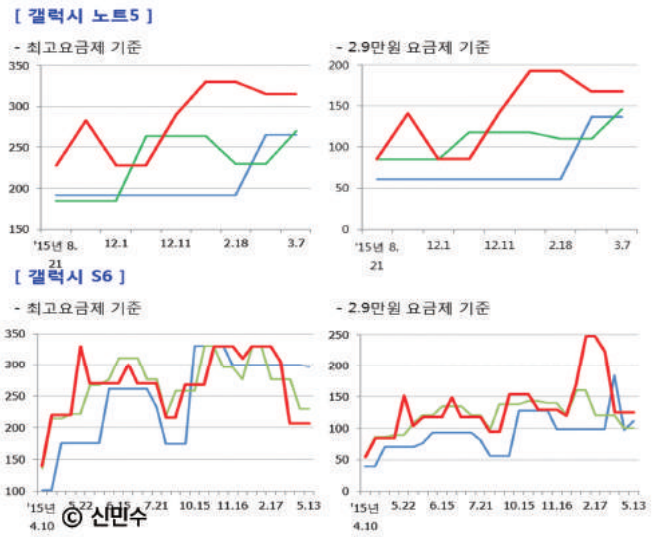

요금제 전략 도입 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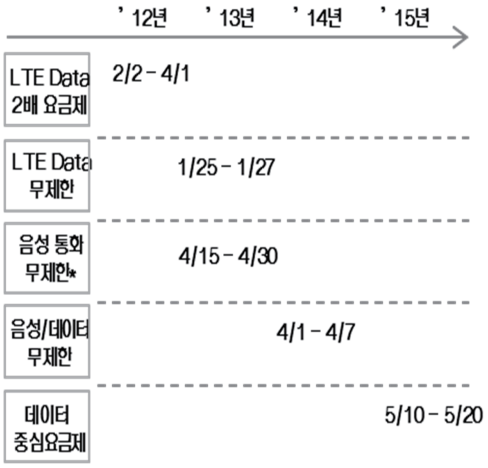

19

경쟁활성화를 위한 대안

- 가입 유형별 보조금 차별 금지
  - 기존에 주로 번호이동 고객에 대해 보조금을 집중하는 형태로 경쟁을 펼친 이통사들로 하여금 기기변경 고객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제 한 것임
  - 가격차별의 금지는 이통사로 하여금 전환비용이 높은 기존 소비자와 전환비용이 낮은 번호이동 소비자 모두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만든 것임
  - 이통사들은 기존 소비자에 대한 높은 가격 을 포기하고 새로운 소비자들을 끌어 올 것인지, 아니면 기존 소비자 중심 으로 이윤을 창출할 것인 지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임
  - 만약 전환비용이 충분히 높아서 기존 소비자의 중요성이 더 높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경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음

© 신민수

20

경쟁 활성화를 위한 대안

- 앞에서 제기된 현안 이슈와 더불어 **MNP**, 신규, 기변 등에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금지에 대한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라 **MNP**, 신규, 기변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 금지되었음
  - 그러나 기변 시 단말기 위약금 면제, 포인트 통한 단말기 결제 등의 차별적인 혜택이 용인되는 반면,
  - **MNP** 및 신규 가입 시는 이를 불허하여 **MNP** 및 신규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함
  - 이러한 가입자유형별 차별금지는 시장점유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며, 서비스와 단말간 번들 상품의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음 (권남훈, **2015***)

* 김원식(2015) "단말기 유통법의 동태적 효과 분석", 사회과학연구, 41권 1호에서 재인용

© 신민수

합리적인 범위 내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 공시

-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바, 이에 적합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기변시 차별적인 혜택 제공은 그 수혜자에게는 단기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으나, 사업자 간 우수한 서비스 출시로 인한 **MNP** 희망 시 전환장벽(위약금 발생, 잔여 포인트 포기)으로 작용될 수 있음
  - 차별적 혜택이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중단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MNP**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여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병행 검토하는 것도 필요함
  - 단말기 유통법 취지에 맞게 이용자 차별이 발생된 현 상황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환장벽을 낮추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단말기 유통법내에도 시행 초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시행령 내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제정한 바,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를 통하여 제3조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민수

합리적인 범위 내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 공시

- 일본의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 지급
  - 일본 이동통신 시장은 국내보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었고, 그에 따라 요금 수준도 높아 국내의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 이에 단말기유통법을 차용하여, 일본 총무성은 `16년 3월 25일 '스마트폰 단말구입보조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였으며, 가입유형별 차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운영토록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음
  - 이번 총무성의 조치는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규제이며, 통신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가입유형별 차등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허용' 하고 있음
  - 일본 이통사의 가입유형별 **iPhone6S 16GB** 판매가 **(5. 26**기준)

구분	NTT Docomo	KDDI	Softbank-mobile
MNP	15,552엔	10,800엔	10,800엔
신규	31,752엔	10,800엔	10,800엔
기변	15,552엔	25,800엔	25,800엔

© 신민수

합리적인 범위 내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 공시

- 일본 (계속)
  - 합리적인 범위내 차별적인 요금 경쟁도 허용

NTT Docomo 가족 구매할인 : 단말 동시구입시 5,184엔 할인	Softbank-mobile MNP 요금할인 : MNP시 월 432엔 X 24개월 할인

© 신민수

합리적인 범위 내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 공시

- 기대 효과

이통사	○ 사업자간 서비스·요금, 지원금 등의 경쟁으로 시장 활성화
소비자	○ 가입유형별 차별적 혜택 철폐 통한 후생 증대 ○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 보장
유통망	○ 중소 유통망, 골목상권 생존권 확보 ○ 중소 유통망의 법 위반 유인 해소

- '합리적인 범위내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의 경우, 상한 내에서 지원금 경쟁을 하기에 추가적인 경쟁 필요시 요금 경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사업자에게 전략적인 자유도를 제고하여 시장내 경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범위내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신민수

합리적인 범위 내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 공시

- 기대 효과 (계속)

- 소비자 선택권 증대
  - 사업자간 지원금,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그에 따른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전환 장벽이 낮아 질 것으로 판단됨

- 중소유통망 상생
  - 중소 유통망의 어려움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판매량 급감에 따른 수익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판매량 회복 목적으로 판매 마진 감소를 부담하더라도 **Payback** 등 위법행위를 행하여 되어 추가 규제(과태료)까지 받게 된 것임
  -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에 따라 판매점의 판매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반 행위 유인 감소 가능

© 신민수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화 구조 구축 필요

- 국내 통신환경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임
- 최근 LTE를 넘어 5G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등 서비스 발전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음
- 국내 통신 환경이 전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제조사 또한 신기술을 적용한 단말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여 통신 산업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였음
- 단말기 유통법을 포함한 통신 산업 관련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것은 경쟁활성화와 더불어 통신산업 내부의 성장 동력 강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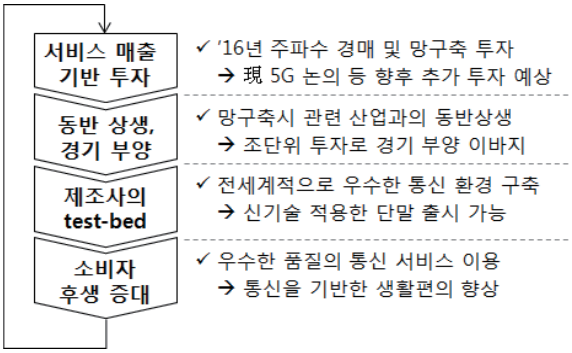

© 신민수

감사합니다.

© 신민수

발제Ⅱ

단말기 유통법과 통신이슈 및 개선과제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중심으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단통법을 어찌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 공시지원금 상한선 인상 논의도 좋지만 국민 모두를 위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부터 즉시 시행해야”

*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통신 소비자들인 우리 국민들의 원성의 배경은 단통법이 지원금을 축소시킨 반면에, 단말기 거품도 제거 못하고, 통신요금의 인하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 △기본료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선택 요금할인제도) △또, 단통법은 좋은 취지와 장점도 있기에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다만, 지원금 상한선 폐지 논란의 경우 현재 상한선인 33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높이는 것을 우선하되 초고가 단말기 가격과 단말기 가격 거품을 감안한다면 일부 상향을 논의할 수 있어 △그러나 지원금 상한선 완전 폐지는 신중한 검토 필요, 신규 단말기 구입 시민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전체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더 시급히 논의돼야 △정부와 통신당국이 이제는 통신재벌 3사, 특히 통신공룡 SKT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서 정책 펼쳐야”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폐지 논란이 뜨거웠다. 지난 6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재의 휴대전화 지원금 33만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뉴스에 댓글로 엄청난 원성을 쏟아냈다. 그 중에서 호감도를 높게 받은 댓글 몇 개를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1)]

> 이통사 순이익만 눈덩이처럼 증가하는데. 이넘들이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돈 더 벌게 단통법을 만드냐?

> 이통사 기록적인 흑자 = 소비자 통신비 가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단말기유통법을 향한 불만은 무엇 때문인지 깊이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있다. 통신 소비자들의 원성

1) 네이버뉴스 / 최성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유지할 것". 2016.06.29. 연합뉴스. http://bit.ly/294bzPH

은 단통법이 지원금을 축소시켜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부담은 높아진 반면에 통신사의 이익은 확대 되었으며, 단말기 거품도 제거 못하고 통신요금의 인하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통신서비스 비용 인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점에 매우 소홀했다. 이 때문에 단통법의 결과로 통신사의 이익 확대만 남았기 때문에 통신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진 것이다.

<표 1> 단말기별 SKT의 공시지원금액

모델	출고가(A)	공시지원금(B)	판매가(A-B)
삼성 갤럭시노트5 64G	965800	265000	700800
삼성 갤럭시 S7 64G	880000	248000	632000
LG G5	836000	228000	608000
Apple 아이폰 6S PLUS 128G	1261700	122000	1139700
Apple 아이폰 6S 128G	999900	122000	877900

*출처:SKT홈페이지(2016.04.22.)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를 기준

위 표는 단말기 출고가와 공시지원금, 판매가를 나타낸 표이다. 소비자가 SKT의 최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때에도 갤럭시S7을 사려면 63만원이나 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판매점·대리점이 규정외 보조금을 지급하여 더 싸게 팔려고 해도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소비자도 불만, 유통판매점도 불만인 상황인 것이다.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
-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다.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 지출을 줄인 통신사들의 배를 불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15만원 꼴로 지급[2]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정도 가능할 것이다.
- 더욱이, 올해 1/4분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이통 3사가 올해 1분기에 977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8782억원보다 11.3%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단통법을 어떻게 보완 해야할까?

□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를 이끌어낼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 통신서비스 부담 완화 즉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단말기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 분리공시는 본래 단통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인데, 국무회의까지 의결된 것을 규제개혁위원회가 부결시켜서 결국 도입되지 못했다. 분리공시 제도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분리공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통신서비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이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2)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해서,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3]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약정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했다. 그 결과 누적 800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약정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다.

-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 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외에도 부가세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상 사기성 요금제 표시 문제,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제외할 것을 촉

3)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구합니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멤버십포인트 문제, 정부가 통신요금 산정이 적정한지 감시해야 할 텐데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기하려는 통신약관신고제 도입 문제(SKT에 대한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32,900원 최소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문제(현행 통신 3사의 300MB 제공을 통신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1GB로 확대)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공시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하여

- 그렇다고 해서 공시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게 되면, 단통법 이전의 이른바 '보조금(지원금) 대란' 발생 우려는 둘째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통신비·단말기 가격거품이 더 심각해지고, 공시지원금을 지급받아서 핸드폰을 싸게 구입했다는 소비자들의 착각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제'(20% 할인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가 오히려 역차별 받게 되어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선택약정할인제가 무색해질 수가 있다. 또, 요금제에 비례하여 공시지원금을 받게 되는 구조상, 고액의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금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받는 등의 문제점도 재발하게 될 것이다.
- 무엇보다도 통신3사가 다시 지원금 및 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리게 되면, 일부 신규 최신폰 가입자들은 혜택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전 국민을 위한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시지원금 상한을 일부 상향조치할 수는 있겠으나, 공시지원금 폐지 수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는 정책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려가면서까지, 갑자기 또 성급하게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논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능한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부터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참조 : 최근 통신 3사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사
"이통3사, 1Q 영업익 증가 예상…마케팅비용 아꼈다"
최욱 기자 ¦ wchoi@yna.co.kr. 승인 2016.04.12 07:42:01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4분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동통신 3사 모두 이동전화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합인포맥스가 12일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이통 3사는 올해 1분기에 9천77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8천782억원보다 11.3% 증가한 수치다. 직전 분기 7천822억원과 비교하면 25.0% 늘었다.

이통사들이 지난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둔 이유는 그간 수익성에 발목을 잡아왔던 마케팅비용을 줄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통신시장이 예전보다 안정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부 이동통신 판매점이 불법 보조금을 뿌린 정황이 여전히 포착되고 있지만, 과거의 '대란'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번호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하루 2만4천건 이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어닝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낼 것으로 관측됐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KT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대비 13.1% 증가한 3천628억원이다.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1.5% 늘어난 5조5천18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늘어난 4천472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기한 4조2천882억원으로 관측됐다.

시장 안정화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LG유플러스도 실적 개선이 전망됐다.

증권업계는 LG유플러스가 지난 1분기에 2조7천119억원의 매출과 1천67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늘었고, 영업이익도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핵심적인 수익성 지표인 이동전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통 3사가 지난해 5월부터 경쟁적으로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 가입자가 늘면서 ARPU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간 ARPU 증가를 이끌었던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포화 상태에 이른 점도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이통 3사는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에너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사업 분야에 일제히 도전장을 던지고 있지만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동전화 ARPU의 부진이 1분기 실적 시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마케팅비용 감소로 이익 측면에서는 통신 3사 모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마케팅비용 감축 기조에 따른 이익 성장은 올해 통신산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 별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6.15일 논평

1. 최근 박근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소비자들의 단통법 폐지 또는 지원금 상한선 폐지 여론을 충분히 이해한다. 단통법이 지원금을 축소시킨 반면에,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는 것도,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통신소비자 일각에서는,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지원금의 상한선이라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된 것이다.

2. 그런데, 단통법을 통해서 단말기 유통구조가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들의 알권리가 일부 확대되고,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제(추가 요금할인 20%제도)'를 통해서 가계통신비를 일부라도 인하할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또 지원금 및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단통법 폐지나 지원금 상한선 폐지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그동안의 태도를 갑자기 바꿔,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성급히 결정하기 보다는, 기본료 폐지·통신요금 인하·단말기 거품 제거·분리공시 도입·공시지원금 지급액 증액 등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향후 지원금 상한선 문제를 다시 논의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3. 단통법은 동일 단말기를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 간 차별이 심각하고, 단말기 유통구조가 매우 불투명하여 단말기·통신비 거품을 유발한다는 지적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분명히 축소시키는 효과가 발생시켰으나, 그렇게 절감된 마케팅 비용만큼 통신비가 인하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서 단통법의 가장 큰 수혜자가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가 돼서 통신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거나 폐지 수준으로 완화되면 휴대전화 구입비용이 낮아져서 소비자의 체감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4. 그렇다고 해서 공시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게 되면, 단통법 이전의 이른바 '보조금(지원금) 대란' 발생 우려는 둘째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통신비·단말기 가격거품이 더 심각해지고, 공시지원금을 지급받아서 핸드폰을 싸게 구입했다는 소비자들의 착각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제'(20% 할인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가 오히려 역차별 받게 되어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선택약정할인제가 무색해질 수가 있다. 또, 요금제에 비례하여 공시지원금을 받게 되는 구조상, 고액의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금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받는 등의 문제점도 재발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신3사가 다시 지원금 및 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리게 되면, 일부 신규 최신폰 가입자들은 혜택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전 국민을 위한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상한 폐지를 논하기 전에 전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기본료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료 폐지야 말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확실하게 가계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행 정액요금제의 통화·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더욱 확대한다거나 최소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조치,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제율 상향 조치(현행 20%에서 30%로 상향) 등도 병행되면 가계 통신비는 더 확실히 인하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지원금 분리공시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단말기 가격에는 분명한 거품과 뻥튀기가 끼어있다는 측면에서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문제점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상향 조치된다 하더라도 실제 공시지원금 지급액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통신사와 제조사는 지금이라도 공시지원금 지급액을 현행 상한선 수준으로라도 높여야 할 것이다.

6. 이처럼 단통법과 지원금 상한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근본적 원인인, 턱없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된 이후에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논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일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는 정책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려가면서까지, 갑자기 또 성급하게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논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능한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부터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

<<< 종합토론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